

『구미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미시장

2. 제안이유

- 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을 위하여 이용 요금 및 할인제도를 개선하고 캠핑장 사용시간 및 구미캠핑장 사용수칙을 변경하여 쾌적한 레저환경을 제공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캠핑장 사용료 반환 기준 추가(안 제8조)
- 나. 캠핑장 시설의 예약 기준 변경(안 제9조)
- 다. 구미캠핑장 시설사용료 변경(안 별표 1)
- 라. 구미캠핑장 시설사용료 감면율 변경(안 별표 2)
- 마. 구미캠핑장 시설사용료 배상 및 반환기준 변경(안 별표 3)
- 바. 구미캠핑장 사용수칙 변경(안 별표 5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,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,
「소비자기본법 시행령」, 「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」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- 다. 합 의 : 기획예산담당관, 감사담당관과 합의되었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「구미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은

- 구미캠핑장 시설의 이용 요금을 인상하고 반환기준을 변경하고자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,
- 타지자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이용 요금을 인상하여 노쇼(No-Show) 사례를 줄이고 숙박형 공공시설 이용취소 위약금을 경감시켜(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, '20.6.8) 이용객의 만족도를 높여 시설물 관리의 효율성 증대 및 쾌적한 레저 환경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.